

순천시의회 공고 제2018-20호

「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하여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, 전문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8년 1월 12일

순 천 시 의 회 의



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1. 폐지이유

-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 협업과제에 의한 법령 정비대상
-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 협의회 운영 상위법 (도시개발법 제28조 제4항)에 위반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토지평가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토지평가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·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8. 1. 12. ~ 1. 17.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pjw1028@korea.kr

2) 주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

3) 팩스 : 061-749-4773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. 끝.

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